

구매계약 일반조건

1. 계약의 체결

공급 계약은 당사 발주서를 발행하고 공급자가 업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문 승낙을 확인한 후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문승낙확인서가 없는 경우, 발주서 상의 조건으로 주문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모든 수정과 보완은 당사의 서면 확인이 있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전화 주문에 있어 주문 번호와 당사 구매부서 담당자의 이름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 당사는 이를 유효한 주문으로 인정한다. 전화 주문의 경우, 공급자가 즉시 주문을 거절하지 않으면 주문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가 제공한 청약의 세부사항들은 발주서에 명시적으로 다시 언급된 경우에만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공급자의 청약은 구속력을 갖는다. 모든 연락은 당사의 구매부서와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의 주문과 그에 관련된 상업적, 기술적 세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당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2. 가격

당사 주문의 기본 가격은 고정가이며 구속력이 있다. 법정 부가가치세는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격 변동과 최저가는 당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그 동의를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3. 송장 발행 및 대금 지급 조건

송장은 각각의 납품 별로 작성되어야 하고 당사의 주문 번호와 참조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납품은 당사가 요청한 서류들과 기술 문서들이 반환된 후에야 이행된 것으로 본다. 당사는 이러한 문서들을 수령할 때까지 잔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물품 대금은 계약이 정확히 이행되고 가격과 산정이 정확한 경우에 지급될 것이다. 납품이 부정확한 경우, 당사는 납품이 정확하게 이행될 때까지 적절한 액수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운송 비용과 포장 비용은 별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송장은 납품과 동시에 제시되지 않고 별도로 송부되어야 한다. 당사의 대금 지급과 이행이 납품의 인수와 계약이행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납품일과 기한

유효한 납품일과 납품기한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납품기한은 구속력이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지연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당사에 통지해야 한다. 납품기일/납품기한, 그리고 그 이후 연장 허가된 납품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지연된 납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당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지된다. 공급자의 발송 지연의 결과로 발생한 보통화물/속달화물과 같은 운송료의 차이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조기 납품의 경우, 당사는 납품이 계약서 상의 날짜에 이루어졌을 때 도래했을 대금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수량

발주서에서 확정된 수량은 준수되어야 한다. 특정 거래의 경우 통관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분할 납품의 경우, 당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했거나 동意的한 범위에서만 이를 인수를 의무가 있다. 수량 초과 납품의 경우, 당사는 직접 부담했던 초과 비용을 공급자가 지불한 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초과납품을 공급자의 처분에 맡길 권리가 있고, 수량 부족 납품의 경우 납품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6. 물품의 인수 및 검사

물품의 대금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물품을 검사한 결과를 근거로 지급된다. 물품의 수량과 품질에 대한 더 상세한 검사는 통상적으로 납품 이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이루어지므로, 당사의 대금 지급이 납품 수량과 품질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물품의 검사와 대금 지급 이후에도 당사는 모든 법적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이것은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문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납품의 결과로 발생한 필요 샘플, 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7. 품질

공급자는 계약의 내용을 완벽히 준수한 납품, 좋은 원자재의 사용, 의도된 효용에 적합한 물품의 우수한 상태를 보증한다. 당사는 불만족스런 납품을 공급자의 처분에 맡기고 완벽한 대체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납품 대부분에 대해, 합의된 품질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가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공급자는 주문을 수락함으로써 불만 제기 시한에 상관없이 하자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것임에 동의한다. 이것은 잠재 하자과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사는 품질보증 클레임 법에서 예정한 불만제기 시한의 단축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는 대체납품 청구권이나 대금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한다. 또한, 당사가 대체납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완벽한 상태의 대체 물품을 납품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대체납품, 대금감액,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상황이 법적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해결될때까지 당사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8. 포장, 운송, 보험

불충분한 포장이나 운송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물품의 손실과 손상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공급자가 (인코텀즈에 따라) 운송에 책임이 있다면, 운송으로 인한 하자는 공급자의 책임일 뿐이다. 위험한 물품은 유효한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되고 표지가 부착되어야 하며, 그와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물품과 함께 인도되어야 한다. 위험한 물품의 분류 또는 (해당되는 경우) "비위험 물질" 표시가 납품서 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위험의 이전은 유효한 관련 인코텀즈 규정에 따른다.

9. 발송 조건

각 납품마다 납품서가 함께 발송되어야 하며, 이 납품서에는 당사의 주문 번호와 참조 번호, 물품에 대한 명세, 순중량과 총중량, 정확한 뉴트의 개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세 정보가 누락된 경우 납품의 인수가 거부될 수 있다. 분할 납품과 잔여 납품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납품서, 선하증권, 첨부 서류들에는 적어도 당사의 주문 번호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0. 법적 권리의 보호

공급자는 자신의 공급하는 물품이 어떠한 상업적 보호권과 기타 법적 조항도 위반하지 않고, 물품 사용과 제 3 자 전매와 관련해 당사에 대한 어떠한 클레임도 발생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제 3 자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공급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협상과 법적 분쟁에서 당사를 지원하고 대표한다.

11. 서류/도면

도면, 비품, 시험 및 제조 관련 규정, 샘플과 도구를 비롯해 공급자에게 맡겨졌던 모든 서류들은 당사 주문의 일부이며 공급자의 주문 승낙과 동시에 구속력을 갖는다. 이 서류들 일체는 당사의 재산이고 당사의 서면 허가 없이 복사되거나 제 3 자에게 공개될 수 없다. 이 서류들은 당사의 첫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물품의 납품과 동시에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당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12. 하도급

하도급, 즉 당사의 주문을 제 3 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당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금지된다. 이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비용에 대한 책임 없이 납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당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지된다.

13. 통지 의무

제품이나 생산 공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전 등을 포함한 공급자의 변경도 사전에 적절한 시기에 통지되어야 한다.

14. 클레임의 중지, 상계

당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공급자는 당사에 대해 제기한 기존의 클레임을 중지할 수 없고 이를 당사가 제기한 클레임과 상계할 수 없다.

15. 구매계약 일반조건

당사의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각각의 개별 법적 계약서 상에 언급될 필요 없이 공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모든 구매 계약과 생산 계약에 대해 유효하다. 더 나아가 1980 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비엔나국제협약에 상관없이, EMS (구매자) 주소지의 강행법과 임의법의 규정들이 유효하다. 본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공급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판매조건보다 우선한다.

16. 품질관리 체계

제품의 품질 수준에 대한 면책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 공급자는 DIN ISO 9001 에 따라 제 3 자 인증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서 표준 ISO 14001 과 표준 ISO/TS 16949 의 요구조건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17. 글로벌콤팩트, 준법경영, 지속가능한 발전

공급자는 환경 (자원, 에너지, 폐기물 등)과 보건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과 요구, 준법경영을 준수 및 실행함을 보증하고, 납품한 제품에 금, 주석, tantal, 텅스텐 등과 같은 분쟁광물의 미세한 흔적조차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18. 재판관할지

본 구매계약 일반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 상의 모든 분쟁은 오직 EMS (구매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을 통해서만 해결한다.